

2021년 제5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중구 운서동 3099-1(공동주택(아파트)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1.5.28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반도건설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				
	지 번	3099-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20,365.8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준주거지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8,688.48㎡	건폐율	42.66%	층수 지하 : -3층 / 지상 : 26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	구 조	철근콘크리트 구조	건축물 동수 6동
	최고높이	74.85m	용적률	302.76%	연면적 합계 97,651.44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○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1년 제5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중구 운서동 3096-4(생활숙박시설, 오피스텔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1.5.28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주식회사게브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				
	지 번	3096-4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,694.4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일반상업지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980.87㎡	건폐율	57.89 %	층수 지하 : -3층 / 지상 : 12층
	주 용 도	생활숙박시설, 오피스텔	구 조	철근콘크리트 구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51.80m	용적률	423.42%	연면적 합계 11,521.17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기준층 복층에 설치한 각재 중 치수 “550mm” 캔티구간에 대한 counter 부재 도면에 표시할 것. [해석과 평면도가 다름] ○ 시공사 선정 후 전이보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하부층 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후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공하시기 바람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1년 제5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3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172-6(연구소, 공장, 오피스텔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1.5.28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재)인천테크노파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172-6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1.742.45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준주거지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6,853.27㎡	건폐율	58.45 %	층수 지하 : -2층 / 지상 : 27층
	주 용 도	오피스텔, 공장, 연구소, 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 구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119.30m	용적률	449.43%	연면적 합계 76,492.70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○ 공사 중지로 인해 노출된 철근은 부식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, 철근의 부식률이 전체 단면적 대비 10%이상인 경우 기존 철근에 이음보다는 케미컬앵커 시공을 권장함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